

	경영일반	사규번호	KIR-0A-H001
		개정번호	5
	이사회 규정	개정일	2024. 3. 28.
		P A G E	6 (표지포함)

제 정 : 1998. 1. 1.
 1차개정 : 2001. 8. 1.
 2차개정 : 2004. 7. 2.
 3차개정 : 2007. 6. 1.
 4차개정 : 2015. 8. 11.
 5차개정 : 2024. 3. 28

【 목 차 】

제1장	총	칙
제2장	구	성
제3장	회	의
	부	칙

	사규번호	KIR-0A-H001	개정번호	5
	사 규 명	이사회 규정	P A G E	1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코오롱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써 구성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정한다.
- ③ 이사회는 일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일인과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정할 수 있다.

	사규번호	KIR-0A-H001	개정번호	5
	사 규 명	이사회 규정	P A G E	2

제5조 (감사 등의 출석등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소집권자(이하에서 정의함)가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(개정 2024. 3. 28.)

제7조 (이사회 소집 및 의장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(개정 2024. 3. 28.)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,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(본 규정에서 “이사회 소집권자”라 한다)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다만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항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(개정 2024. 3. 28.)
-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 (개정 2024. 3. 28.)
- ④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감사가 이사회 소집청구를 하였는데도 청구를 받은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(개정 2024. 3. 28.)

	사규번호	KIR-0A-H001	개정번호	5
	사 규 명	이사회 규정	P A G E	3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(會日)을 정하고,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하시(何時)라도 회의할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(決議)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(제397조의2 및 제398조 등)상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(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결의)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전(前)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주총에 관한 사항
 1. 주주총회의 소집
 2.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- ② 경영에 관한 사항
 1.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
 2. 업무집행 임원의 선임과 해임
 3.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 4.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5. 준법지원인 임면
-

	사규번호	KIR-0A-H001	개정번호	5
	사 규 명	이사회 규정	P A G E	4

③ 재무에 관한 사항

1. 신주의 발행
2. 사채의 모집
3. 준비금의 자본전입
4. 전환사채의 발행
5.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
6.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
7. 회사보유 자기주식의 소각
8. 기타 상장사 공시규정에 의거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사항
9. 제반 자금행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

④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사항

제11조 (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

- ①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, 업무상 효율을 위해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원을 선정한다.
- ③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유고 시 사내 임원서열 순에 따른다.
- ④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내용 및 결과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	사규번호	KIR-0A-H001	개정번호	5
	사 규 명	이사회 규정	P A G E	5

제13조 (간사)

- ①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 의 자료수집 등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회사 의 직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, 의장 의 지휘를 받아 사무지원을 담당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 결의(決議)에 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7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